



정책동향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국민연금 확대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

1. 추진경위

□ 국민연금 도입 및 확대과정

- 1973년 12월 1일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여 197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사회여건의 악화로 보류(1988년 재추진까지 15년 소요)되었음.
-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여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하였으나 당시에 초기에는 노총·경총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음.
- 1995년 7월 1일 농어민 및 농어촌 자영자로 확대하였음.
 - WTO체제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개인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가입자가 신고한 대로 소득을 결정함으로써 민원 등의 반발은 없었으나 실제소득보다 훨씬 낮게 신고되어(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52%에 불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음.
-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도시지역 확대추진 경위

-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실무추진단』(1996년 5월)을 구

성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1997년 6월)시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1997년 12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년 9월)과 한국조세연구원(1997년 12월)에서 도시 지역 확대시의 소득결정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음(1998년 2월).

- 농어민연금 확대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고권장소득 제시방안 도입
⇒ 서울시 반포3동 등 4개지역에서 15,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영자의 평균 신고소득월액은 161만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140만원보다 높게 신고되어 신고권장소득의 수용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1998년 12월)

- 정부, 여·야당안을 반영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이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금급여율을 55→60%, 보험료 부담률을 노·사·퇴직금 전환금 각 3%에서 노·사 각 4.5%로 변경됨.

2. 도시지역 확대 추진현황

□ 사전준비

- 소득결정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후 소득결정 모형을 확정하였음.
- 가입대상자 확정: 도시지역 거주자 18~60세 미만의 주민등록자 2723만명에서 적용을 제외해 가는 방법으로 최종가입대상자(1047만명)를 확정하였음. 적용제외 대상자는 18세 미만, 6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대상자 326만명, 공적연금(공무원, 사학연금 등) 가입자 및 수급권자 514만명, 공적연금 가입자·도시지역 대상자의 무소득 배우자 584만, 18~22세 무소득자(학생 및 군인포함) 251만명임.
- 주민전산자료(2723만건), 국세청 과세자료(1618만건), 의료보험자료(2308만건), 공시지가자료(2674만건), 연금가입자 명부(640만건), 학생(317만건), 채소자(9만건) 및 노동부 구직등록·실업급여자 명단(103만건) 등의 자료를 입수 활용하였음.

⇒ 주민전산자료: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자 통보 시점까지는 1개월 시차 발생(2%정도의 변동 예상)

- 홍보: 1998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의 필요성·전국민연금의 당위성·국민연금기금의 안정운용 등을 집중 홍보하였음. 1998년 7월~1999년 1월까지 TV 및 라디오 캠페인(6896회)실시, 중앙일간지(14개사, 3회씩) 및 지하철차량(3,888량)에 기금 홍보, 공단 홈페이지 구축 등임.

□ 소득신고서 배부 및 접수

- 소득신고서 배부: 1999년 2월 4일까지 통장을 통하여 가입대상자 1047만명에게 배부
- 소득신고서 접수현황
 - 1999년 2월 5일 소득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2월 21일 현재 100만 9500명이 신고하여 대상자의 10%가 신고를 완료함. 도시별로는 청주(34.4%), 안동(28.9%), 충주(27.5%)가 높은 수준이나 구리(4.1%), 서초(4.2%), 종로 중구(5.2%)는 낮은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충북(32.0%), 대전(18.2%), 충남(16.3%)이 높으며, 서울(6.3%), 인천(8.1%), 부산(8.2%)은 낮은 수준임.
 - 초기에는 1일 2~3만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일 17만명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
 - 소득신고서 중 소득이 있다고 신고된 것이 42%인 반면에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무소득자의 납부예외신고는 48% 수준에 이르고 있음. 당초의 소득신고목표인 6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임.

3.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민원발생

-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대상자에게 소득신고서가 배부된 데 대하여 항의
 -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학생명부에 누락되었거나, 유학생, 보안상 자료협조가 되지 않은 군인 등에게는 신고서가 배부됨.

- 권장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제시되었다는 불만
 - 국세청의 1998년도 과세자료가 1999년 5월에 종합신고되어 1999년 11월에 확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1997년 자료를 사용, IMF로 인한 1998년의 소득감소를 반영하지 못함.
- 휴·폐업자, 실직자 등 무소득자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자에게 휴·폐업 또는 실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권장소득을 제시한 데 대한 반발
 - 휴·폐업은 국세청의 1998년 11월 30일 기준 자료로 이후에 휴·폐업 한 경우이고, 실직자 명단은 1998년 12월 31일 기준자료로 이후의 실직자는 누락됨.

□ 제도거부자의 반발

- 강제가입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임의가입론 대두
- 확대적용 시기에 대한 비판(IMF)으로 연기론 대두
- 개인연금·사보험 업계 및 가입자의 반발
 - 국민연금확대시 업계입장에서 영업위축에 대한 불안감
 - 가입자의 경우 추가로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

□ 악성 유언비어 및 불신 확산

-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자금, 타연금의 적자 메우기 등으로 사용되거나 IMF로 부족한 정부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빨리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아도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 소용없다는 등의 유언비어 확산
-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금운영을 불신하게 되어 제도 거부

□ 기타 일선창구요원 및 통장의 불친절·고압적 자세에 대한 불만

4. 보완대책

□ 민원해소 대책

-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자 관련 대책
 - 교육부 및 병무청의 협조를 얻어 기존자료를 정밀대사하여 누락자 및

착오통지자는 직권납부예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함.

□ 휴·폐업, 실직자 등 무소득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자 관련 대책

- 1998년 12월 1일 이후 휴·폐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무서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각 지사별로 입수하여 직권납부예외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함.
- 노동부와 협조, 최신 구직등록·실업급여자 명단을 입수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납부예외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함.
- ‘납부예외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안내함.
 - 납부예외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말함.
 -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됨.
 - 아울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장애 및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함.

□ 권장소득 과다 제시 관련 대책

- 신고권장소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 신고권장소득은 표현 그대로 실제소득을 신고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제시한 것이며, 신고소득은 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을 참고하여 실제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부과하기 위한 기준임. 따라서 신고권장소득과 신고소득은 과세소득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자 불편해소 대책

- 소득신고기간 연장 및 보험료 예비고지
 - 1999년 3월 13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에게는 3월말까지 가입자 증서와 내게 될 보험료를 예비 고지함. 보험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칠 수 있도록 정정기간을 설정함(4월 1~15일).
 - 3월 13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2차 일제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가입대상자가 연금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할 소득금액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하도록 유도함.

－ 소득신고 방법의 다양화

- 그동안 가입자가 공단이나 동사무소 및 통장에게만 신고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전화·팩스로도 신고 가능토록 조치하고, 전화나 팩스로 신고한 사항은 가입자증서 교부시 기재하여 통보하고 가입자가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절차간소화를 위한 기초치 내용의 홍보 강화

- － 소득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이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모든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함. 절차간소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본인이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
- 학생·군인 및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서 납부예외 신청란에 기재하여 신고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부부 모두에게 통지된 경우 소득신고서의 적용제외 신청란에 별도 소득이 없는 자를 기재하여 신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1998년 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소득신고서에 실제소득을 기재하여 신고
- 자영업을 하는 자로서 1998년 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

□ 악성 유언비어 및 불신해소 대책

- －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한문 및 연금안내서를 가입자에게 발송

- 신고권장소득 및 연금급여의 내용, 기금의 운용, 연금의 필요성 및 그동안의 국민 불편 초래에 대한 사과말씀을 담은 편지를 750만 가입세대에 발송하였음. 연금에 대한 악성 루머의 해명과 가입자의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연금안내서 동봉하였음.

□ 제도거부자에 대한 대책

- － 제도거부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 직원 재교육

- － 교육을 전담할 교관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를 편성·운

영하여 공단직원, 통장(統長), 기존 공공근로요원 등 연금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홍보효과 제고 대책

－ 홍보방향의 전환

- 원론적 홍보나 제도자체 및 확대에 대한 본질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토론식 홍보를 지양하고 구체적·개별적 대면홍보 중심으로 전환
- 개인연금 등 금융상품과의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의 수익성·보장성·안정성 홍보

－ 특별홍보팀의 구성·운영

- 중앙에 전담 홍보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사별로 홍보실시팀 운영
- 중앙 홍보기획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직능단체·사회단체의 본부 등 대규모 조직과 제도 거부자에 대한 중점 홍보 활동을 전개함. 각 지사의 홍보실시단의 요청시 지원활동도 수행
- 각 지사의 홍보실시단은 지사 관내의 직능단체·사회단체 지부, 지역내 각종 대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연금내용 홍보

－ 시민단체·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 시민단체와의 정보 및 자료교환 실시
- 직능단체별로 중앙, 시·도지부, 시·군·구지회 등 단위별로 설명회 개최

□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대면 홍보활동 전개

- － 실업인력을 대면홍보요원으로 확보, 투입함으로써 실업구제 효과와 연금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양함. 활용인원은 2만명이고, 활동기간은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년간임.
 - 공단, 공단지사, 동사무소 및 통장 보조요원으로 투입하여 대민 밀착홍보, 소득신고접수, 민원전화 안내 및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2000년 1월 예정인 의료보험통합 등 보건의료분야 개혁에 따른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1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함.

5.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 절차간소화 조치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민원은 금번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보험료고지가 완료되는 4월 하순이후 다소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나 보험료를 사전에 예비고지하는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못될 것임.
- 훈련받은 2만명의 공공근로요원이 대면홍보활동에 본격투입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도시지역 연금확대사업이 안정케도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함.

어린이집·놀이방 1999년도 보육료 동결

☐ 보육료 동결 목적

- IMF 한파로 인하여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방치되거나 보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1999년도 보육료를 동결기로 함.
- 누구나 큰 부담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사업고유의 아동복지정신을 실현하고자 함.

☐ 실직자 자녀 보육료 50% 감면

- 보육시설에서는 실직자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1998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한 실직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50%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있음(1998년 8월 현재 4,028명에게 혜택 부여).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보육료 정부 지원

- 보육시설에서는 1999년도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6,024명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59,659명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무료보육을 실시할 계획임.

□ 만 5세아에 관한 무상보육 실시

- 지난 1997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만 5세아의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우선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체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

보건복지부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 1월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70여명의 노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동 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올해부터 2003년까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노인보건복지기반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다.

1. 분야별 주요 시책 내용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는 19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66만 명(전체노인의 22%)에서 92만 4천명(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할 예정임.

□ 치매노인 보호 체계 완비

-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 상담, 보호 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 노인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을 통한 간병 및 주간·단기보호서비스를 확대함.

- 지역사회 치매노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하여 치매노인 가족 모임 등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을 활성화함.
 - 신원 확인 팔찌를 개발·보급하고, 경찰관서,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
-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 →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요양병원을 12개소(960병상)→시·도별 1개소 이상(1,300병상)으로 확충함.

☐ 독거노인 보호 체계 확립

-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전화 달아드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노인 등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확대를 통한 ‘말벗 맺어주기 운동’을 전개함.
- 위급상황시 인근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독거노인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Food Bank사업을 활용, ‘급식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봉사지도원제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현재 17,000명 정도인 지역봉사지도원을 대폭 늘리고, 교통비 등 수당 지급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실시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보람찬 생활을 유도함.
- 전직 경험을 살린 전문 분야, 직능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 퇴직 교사 등의 청소년 상담 및 선도, 학습 지도 및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돌보는 등 다양한 활동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 실시로 세대간 교류 강화

☐ 재가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 노인이 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을 130개소(25천명)→250개소(50천명)로 확대함.